

# 독일 연방정부의 유럽연합 소피아 군사 작전 관련

## 정보 보고 의무에 관한 논의

### - 연방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

독일 레겐스부르크 대학교 법학 박사과정 정다운

## I. 들어가는 말

2022년 10월 26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15년 유럽연합 지중해 해군(European Union Naval Force Mediterranean - EUNAVFOR MED, 이하 ‘EU 지중해 해군’)이 창설되는 과정에서 독일 연방정부가 연방의회에 관련 군사 작전의 상세 계획 등을 적시에 전달하지 않은 사안과 관련하여 제기된 기관쟁의심판(Organstreitverfahren)<sup>1)</sup>에 대해 이 심판 청구인인 녹색당(Bündnis 90/Die Grünen, Grüne)과 좌파당(Die Linke, LINKE)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sup>2)</sup> EU 지중해 해군은 불법적인 난민 밀입국 범죄 조직을 퇴치하여 지중해에서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난민 참사 및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결성된 EU 차원의 공동 군사조직으로<sup>3)</sup>, 리비아 연안에 직접 군

1) 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기관쟁의심판의 법률적 근거는 연방헌법재판소법(Bundesverfassungsgerichtsgesetz) 제63조 이하에서 찾을 수 있다. 동법 제13조 제5호에 따르면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 최고헌법기관의 권리와 의무 범위 또는 기본법 및 연방 최고헌법기관의 사무규칙을 통해 고유 권리를 갖는 다른 관계기관의 권리와 의무 범위에 관해 분쟁이 있는 때에 관련 기본법 조항의 해석을 통해 이러한 분쟁을 해결할 권한을 갖는다. 기관쟁의심판의 청구인은 동법 제63조에 따라 연방 최고헌법기관인 연방의회, 연방참사원, 연방정부, 연방대통령이며, 이 외에 정당 또한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여 헌법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때에는 기본법 제21조에 규정된 정당의 권리 범위와 관련된 사안을 기관쟁의심판을 통해 다룰 수 있다(Bundesverfassungsgericht, Organstreitverfahren, [https://www.bundesverfassungsgericht.de/DE/Verfahren/Wichtige-Verfahrensarten/Organstreitverfahren/organstreitverfahren\\_node.html#:~:text=Auch%20politische%20Parteien%20%C3%BCben%20die,21%20GG%20im%20Organstreitverfahren%20verteidigen](https://www.bundesverfassungsgericht.de/DE/Verfahren/Wichtige-Verfahrensarten/Organstreitverfahren/organstreitverfahren_node.html#:~:text=Auch%20politische%20Parteien%20%C3%BCben%20die,21%20GG%20im%20Organstreitverfahren%20verteidigen), 최종검색일: 2022. 12. 7.).

2) 연방헌법재판소 2022. 10. 26. 결정, 2 BvE 3/15, 2 BvE 7/15.

3) 2014년에는 약 170,000명의 난민이 지중해를 거쳐 주로 이탈리아, 몰타 등에 밀입국을 시도하였는데, 이는 2013년에 비해 약 2.7배 증가한 수치로 조사되었다. 또한 EU 지중해 해군의 도입이 논의되던 시기인 2015년 상반기에만 약 220,000명의 난민이 밀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난민선 전복으로 수천 명이 사망하는 사태가 벌어져 유럽 사회 내에서 난민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Deutscher

함을 파견하여 밀입국 선박을 수색하고 나포하는 이른바 ‘소피아 군사 작전 (Militäroperation Sophia)’<sup>4)</sup>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자 조직되었다. 2015년 5월 EU 이사회가 이러한 군사 작전의 도입을 결정한 이후 독일 연방정부가 자국의 무장 병력을 동 작전에 투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같은 해 9월 16일로,<sup>5)</sup> 이어 10월 1일 연방의회에서의 표결이 신속히 이루어져 독일 연방군의 소피아 군사 작전 투입이 최종적으로 승인되었다.<sup>6)</sup>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독일 연방정부가 소피아 군사 작전의 기초가 되는 위기관리계획 (Krisenmanagementkonzept) 등 연방의회에서의 논의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과 관련해 연방의회 내 소수정당인 녹색당과 좌파당을 중심으로 많은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다.<sup>7)</sup> 이들은 연방정부가 기본법 제23조 제2항 제2문<sup>8)</sup>이 규정하고 있는 EU 사안 관련 보고 의무<sup>9)</sup>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각각 연방헌법재판소에 기관쟁의심판을 청구하였고, 최근 재판부는 이에 대한 병합 결정에서 EU 안보정책(Sicherheitspolitik) 영역 또한 기본법 제23조 제2항 제2문의 보고 의무 대상에 해당한다고 선언하면서 연방정부가 연방의회의 참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였다. 아래에서는

---

Bundestag, Antrag der Bundesregierung - Beteiligung bewaffneter deutscher Streitkräfte an der EU-Operation EUNAVFOR MED als ein Teil der Gesamtinitiative der EU zur Unterbindung des Geschäftsmodells der Menschenschmuggel- und Menschenhandelsnetzwerke im südlichen und zentralen Mittelmeer, BT-Drs. 18/6013, 16.09.2015, S. 5, <https://dserver.bundestag.de/btd/18/060/1806013.pdf>, 최종검색일: 2022. 12. 7.).

- 4) 이 군사 작전명은 2015년 8월 24일 독일 난민 구조 선박에서 처음으로 태어난 아기 ‘소피아’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것이다(Alexander Heinrich, Kampf gegen Schleuser, 11.07.2016, [https://www.das-parlament.de/2016/28\\_29/europa\\_und\\_die\\_welt/435010-435010](https://www.das-parlament.de/2016/28_29/europa_und_die_welt/435010-435010), 최종검색일: 2022. 12. 7.).
- 5) Deutscher Bundestag, Antrag der Bundesregierung - Beteiligung bewaffneter deutscher Streitkräfte an der EU-Operation EUNAVFOR MED als ein Teil der Gesamtinitiative der EU zur Unterbindung des Geschäftsmodells der Menschenschmuggel- und Menschenhandelsnetzwerke im südlichen und zentralen Mittelmeer, BT-Drs. 18/6013, 16.09.2015, S. 1, <https://dserver.bundestag.de/btd/18/060/1806013.pdf>, 최종검색일: 2022. 12. 7.
- 6) 전체 표결수 567표에서 찬성은 449표, 반대는 116표, 기권은 2표로 집계되었다(Deutscher Bundestag, Plenarprotokoll 18/127, 01.10.2015, S. 12346 ff., <https://dserver.bundestag.de/btp/18/18127.pdf>, 최종검색일: 2022. 12. 7.).
- 7) 앞서 언급한 연방의회 표결에서 녹색당과 좌파당 소속 의원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Deutscher Bundestag, Plenarprotokoll 18/127, 01.10.2015, S. 12346 ff., <https://dserver.bundestag.de/btp/18/18127.pdf>, 최종검색일: 2022. 12. 7.).
- 8) 기본법 제23조 제2항 제2문: “연방정부는 연방의회와 연방참사원에 포괄적으로 그리고 가능한 한 조속히 보고해야 한다.”
- 9) 기본법 제23조 제2항 제1문은 “연방의회, 그리고 주는 연방참사원을 통해 유럽연합에 관한 사안에 관여한다.”라고 규정하여 연방의회의 EU 사안에 대한 관여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본법 제23조 제2항 제2문이 규정한 연방정부의 연방의회에 대한 보고 의무는 EU 사안과 관련된 보고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방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재판부의 주요 판단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진 1: 소피아 군사 작전 투입 선박과 리비아 난민의 모습><sup>10)</sup>

## II. 사실관계

EU 이사회는 2014년부터 급격히 심화된 지중해 연안의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4월 23일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EU의 지중해 주둔을 강화하는 동시에 난민 밀입국 조직에 대한 EU 기관의 대응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외교 및 안보정책의 고위 대표(Hohe Vertreterin)는 임시회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위기관리계획안을 작성하여 각 EU 회원국에 제출하였다. 독일 연방정부에도 이러한 계획안이 4월 30일경 이미 전달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2015년 5월 녹색당 소속 일부 의원들은 EU 사안 관련 문서를 지원하는 연방의회 내 PE 5분과<sup>11)</sup>에 위기관리계획안이 연방의회에 송달될

10) 사진 출처: Deutsche Welle, Kommentar: Die “Operation Sophia” und der Zynismus Europas, 31.03.2020, <https://www.dw.com/de/kommentar-die-operation-sophia-und-der-zynismus-europas/a-52944008>, 최종검색일: 2022. 12. 7.

11) PE 5분과는 연방의회 내 행정 분과로 기본법 제23조 제2항 제1문에 규정된 EU 사안에 대한 연방의회 의원 권한이 제대로 행사될 수 있도록 연방의회 내 의원, 위원회, 정당에 EU 사안 관련 문서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동 규정 제2문에 따른 연방정부의 정보 보고 의무 준수 또한 감시한다(Deutscher Bundestag, Die Unterabteilung Europa, 08.2017, [www.btg-bestellservice.de/pdf/20074500.pdf](http://www.btg-bestellservice.de/pdf/20074500.pdf), 최종검색일: 2022. 12. 7.).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다. 그러나 연방외무부(Auswärtiges Amt)의 송달 거부로 위기관리계획안의 내용을 검토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녹색당 의원들은 직접 연방외무부에 송달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연방외무부는 위기관리계획안이 말 그대로 아직 계획안에 지나지 않으며 공식문서에 해당하지 않아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하면서, 4월 23일에 개최된 EU 이사회의 임시회의 내용이 공식적 결의(Beschluss)를 거친 이후에야 연방의회에 송달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이후 2015년 5월 18일 EU 이사회는 ‘결의(공동 외교·안보 정책) 2015/778’<sup>12)</sup>을 통해 EU 지중해 해군의 군사 작전을 공식적으로 도입하였고, 당일 이사회에 의해 승인된 위기관리계획에 기초하여 군사 작전이 수행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EU 이사회의 공식 결의 이후 독일 연방외무부는 연방의회 내 외무 위원회, 방위 위원회, EU 사안 위원회 소속 의원에게만 연방의회 내 비밀문서 보관소(Geheimschutzstelle)에서 해당 위기관리계획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제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였다. 녹색당의 일부 위원이 이러한 제한적 열람에 대해 서면 답변을 요청하자 연방외무부는 연방정부가 연방의회 내 관할 위원회와 그 외 관련 위원회에 이미 위기관리계획을 송달했으며, 또한 이러한 송달이 어떠한 법적 의무를 인정하여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답변만을 제출하였다. 즉 연방정부는 위기관리계획이 기본법 제23조 제2항 제2문이 규정한 연방정부의 헌법상 보고 의무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좌파당 또한 녹색당과 동일한 비판을 제기하였는데, EU 지중해 해군의 도입이 결정된 5월부터 독일 연방의회에서 연방군의 소피아 군사 작전 투입이 결정된 10월에 이르기까지 좌파당은 위기관리계획에 모든 연방의회 의원의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 특히 연방의회 의장에게 연방정부의 정보 보고 의무 수행을 촉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

12) Rat der Europäischen Union, BESCHLUSS (GASP) 2015/778 DES RATES vom 18. Mai 2015 über eine Militäroperation der Europäischen Union im südlichen zentralen Mittelmeer,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DE/TXT/PDF/?uri=CELEX:02015D0778-20181221&from=PL>, 최종검색일: 2022. 12. 7.

한편 2015년 9월 23일 터키의 총리 다우토올루(Davutoğlu)가 당시 28명의 EU 소속 정부 수반에게 이주 문제, 공동 외교·안보 정책, 난민 정책의 외교적 측면, EU와 제3국 간의 협업, EU 및 터키의 이주 정책 등 다양한 현안들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냈다는 한 신문기사가 발표되었는데, 이에 10월 1일 좌파당은 PE 5분과에 연방정부가 연방의회에 해당 서한을 송달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10월 5일 연방총리청(Bundeskanzleramt) 소속 ‘연방정부/EU 이사회의 유럽정책 조정(Koordinierung der Europapolitik der Bundesregierung/Europäischer Rat)’ 분과는 이러한 서한이 당시 총리인 메르켈에게 보내진 개인적 서한일 뿐이며, 다른 정부 수반과의 서신 왕래는 기본법 제23조 제2항 제2문의 정보 보고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서한의 송달을 거부하였다.

이에 녹색당과 좌파당은 각각 이 사건 기관쟁의심판의 청구인 I 과 청구인 II로서 피청구인인 연방정부가 기본법 제23조 제2항 제2문에 규정된 EU 사안에 대한 연방의회의 참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다. 즉 연방정부가 EU 해군 군사 작전의 준비 과정에서 마련된 위기관리계획을 최대한 이른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고 연방의회에 제출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정보 보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공통된 주장을 제기하였다. 이에서 더 나아가 좌파당은 연방정부가 터키 총리가 보낸 서신을 연방의회에 공개하지도 않고, 이러한 서신이 EU 사안과 관련되지 않는다는 근거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이 또한 정보 보고 의무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 III. 연방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 내용

#### 1. 기본법 제23조 제2항 제2문에 대한 해석

이 사건 기관쟁의심판의 쟁점은 EU 이사회의 위기관리계획과 터키 및 EU의 이민·난민 정책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터키 총리의 서한이 기본법 제

23조 제2항 제2문에 따른 연방정부의 보고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연방정부가 이를 동 규정의 요건에 따라 포괄적으로, 그리고 가능한 한 조속히 보고했는지 여부이다. 이에 관한 판단은 기본법 제23조 제2항 제2문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재판부는 먼저 연방의회 협력권의 효과적 실현을 의도한 동 규정의 입법 목적을 명시한 후 이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해석 내용들을 제시하였다. 재판부의 설명에 따르면 헌법개정을 통해 유럽조항(Europa-Artikel)이라 불리는 기본법 제23조를 마련한 것은 연방의회에 폭넓은 협력권을 부여함으로써 EU 사안과 관련해 적용되던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전통적 사무배분 방식을 새롭게 규율하려는 시도였다.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제23조 제2항 제2문에 규정된 연방정부의 보고 의무는 연방의회에 부여된 협력권의 효과적 실현을 목적으로 한 것이며, EU 사안에 대한 행정부와 입법부의 공동책임을 표현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연방의회의 정보 요구는 다양한 측면 - 실질적, 시간적, 형식적 측면 - 에서 충족되어야 하며 연방정부의 정보 보고의 대상, 방식 및 한계 또한 연방의회 협력권의 효과적 실현을 의도한 동 규정의 목적에 맞추어 정해져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으로 재판부는 첫째, 정보 보고의 대상이 포괄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이는 EU 공동 외교·안보 정책 및 공동 안보·방위 정책 또한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 둘째, 보고 방식과 관련해서는 보고가 개별 의원, 또는 일부 의원 그룹이 아닌 연방의회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의회의 기능이 완전히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셋째, 재판부는 이른바 ‘분류 정보(klassifizierte Information)’, 즉 비밀 보호 규정이 적용되는 정보는 기본법 제23조 제2항 제2문의 요건을 원칙적으로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의회 내에서 논의되는 정보가 민주주의 원칙에 근거한 ‘의회 공개성의 원칙(Grundsatz parlamentarischer Öffentlichkeit)’에 부합하여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분류 정보를 제한적으로 열람하게 하는 경우는 동 규정에 따른 정보 보고의 수행으로 볼 수 없다. 넷째, 연방정부의

정보 보고 의무의 한계가 인정되는 경우와 관련하여 해당 사안이 행정부 책임의 핵심영역 또는 공공복리와 관련된 경우를 제시하였다. 다섯째, 이러한 정보 보고 의무의 한계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연방정부는 보고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연방의회에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 2. 연방정부의 위기관리계획 보고 의무의 위반

기본법 제23조 제2항 제2문에 대한 해석을 통해 도출된 위와 같은 판단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심판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연방정부의 위기관리계획 보고 의무 위반 및 이로 인한 연방의회 참여권 침해를 판단한 결과 연방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용하였다.

먼저 재판부는 위기관리계획이 동 규정이 의미하는 EU 사안에 관련되어 연방정부의 정보 보고 의무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EU의 공식적 공동 안보·방위 정책 영역에 해당하는 소피아 군사 작전이 위기관리계획에 기초하여 수행되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볼 때 위기관리계획 또한 EU 협약(Vertrag über die Europäische Union)<sup>13)</sup> 제43조 이하에 규정된 공동 안보·방위 정책 영역의 사무 중 하나로 파악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또한 위기관리계획이 EU 내 기관들에 의해 작성되었고, 계획의 실행 또한 EU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것이 EU의 목표 실현에 직접 기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본법 제23조 제2항 제2문이 규정한 EU 사안에 관련된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방위 영역의 사무가 회원국의 자유의사원칙(Freiwilligkeitsprinzip)에 따라 수행되고 원칙적으로 그 수행이 강요되지 않는다는 점은 위기관리계획을 EU 사안으로 분류하는 이러한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공식적인 입법 문서 형태를 갖춘 경우에만 EU 사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

13) EU, Vertrag über die Europäische Union, 26.10.2012. [https://eur-lex.europa.eu/resource.html?uri=cellar:2bf140bf-a3f8-4ab2-b506-fd71826e6da6.0020.02/DOC\\_1&format=PDF](https://eur-lex.europa.eu/resource.html?uri=cellar:2bf140bf-a3f8-4ab2-b506-fd71826e6da6.0020.02/DOC_1&format=PDF), 최종검색일: 2022. 12. 12.

다음으로 EU 사안에 관련되어 기본법 제23조 제2항 제2문의 보고 의무의 대상이 되는 이러한 위기관리계획을 연방정부가 EU 이사회로부터 제공 받은 시점인 2015년 4월 30일경에 조속히 보고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정부의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연방정부가 이러한 위기관리계획의 작성에 직접 참여하였기 때문에 연방의회에 이를 적시에 보고할 기회가 더욱 많았음에도 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다. 연방정부가 2015년 5월 21일 이후에는 연방의회 내 특정 위원회만을 대상으로 비밀문서 보관소에서의 제한적 열람을 허용하였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형태의 제한적 정보 제공이 기본법 제23조 제2항 제2문의 해석에 따라 도출된 기준, 즉 연방의회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위기관리계획은 연방정부 내부의 의사 형성에 관련된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행정부 책임의 핵심영역에 해당하지 않아 정보 보고 의무의 한계가 인정되는 사례도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결론적으로 연방헌법재판소는 위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연방정부의 보고 의무 위반 및 이로 인한 연방의회의 참여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3. 연방정부의 터키 총리 서한 보고 의무의 위반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정부가 터키 총리의 서한 보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좌파당의 주장 또한 인용하였다. 먼저 재판부는 터키 총리의 서한이 2015년 9월 23일 28명의 EU 정부 수반에게 동시에 보내졌다는 사실과 이주 및 난민 문제에 대한 EU와 터키의 협력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는 사실이 이미 당시의 신문 기사를 통해 공공연히 알려졌고, 이로써 연방의회가 이러한 서한이 기본법 제23조 제2항 제2문의 EU 사안과 관련된다고 판단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충분히 존재했다고 보았다. 나아가 서한의 주제가 2015년 11월 29일의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난민 이동의 해소를 위한 EU-터키 간 공동 실행



계획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서한은 명백히 EU 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메르켈 총리에게 보내진 개인적 서한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서한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양국 간 서신 왕래의 신뢰가 깨져 연방정부의 기능이 약화된다는 연방정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연방정부 측에서 서한이 EU 사안과 관련되지 않는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합당한 이유 없이 서한의 보고를 거부하는 것은 기본법 제23조 제2항 제2문이 규정한 보고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IV. 나가는 말

메르켈 총리하에서 독일 연방정부는 외교·안보·방위 영역에 있어 연방정부의 자유재량을 폭넓게 인정하는 태도를 견지해 왔다.<sup>14)</sup> 이에 대해 꾸준히 비판적 의견을 나타냈던 녹색당과 좌파당은 외교·안보·방위 정책의 수립에 있어 행정부와 입법부의 협력을 강조하며 행정부의 결정에 대한 입법부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원했다. 이러한 태도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난 사례가 바로 이 글에서 소개한 EU 지중해 해군 및 소피아 군사 작전 정보와 관련된 기관쟁의심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군사 작전은 몇 차례의 재연장 끝에 구조된 난민을 분할 수용하는 문제와 관련해 EU 회원국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2019년 6월을 끝으로 이미 완료되었지만,<sup>15)</sup> EU 난민 정책이라는 중대한 외교·안보·방위 문제의 결정과 관련해 독일 연방의회의 참여권을 뒤늦게나마 보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외교권이 행정권에 속한다는 전통적인 이해가 연방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본법 제23조의 해석에 따라 변화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에 따라 유럽의 러시아 제재와 같

---

14) Gigi Deppe, Bundestag muss besser informiert werden, 26.10.2022. <https://www.tagesschau.de/inland/informationsrechte-bundestag-103.html>, 최종검색일: 2022. 12. 8.

15) Bundeswehr, Der Einsatz EUNAVFOR MED Operation Sophia, <https://www.bundeswehr.de/de/einsaetze-bundeswehr/abgeschlossene-einsaetze-der-bundeswehr/eunavfor-med-operation-sophia>, 최종검색일: 2022. 12. 8.

은 EU의 각종 현안에서도 연방의회의 참여가 활발해질 가능성이 크다. 다변적인 유럽 사회의 외교·안보·방위 이슈와 관련하여 입법부의 민주적 통제가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